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7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보험 미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등 금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가입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험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61조제8호 및 제62조제4호 각각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험 미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등 금지

개정안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 설></u>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	<u>제54조의2(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종 등의 금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는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61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u> 제62조(벌칙) ----- -----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

현행법상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¹⁾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하고,²⁾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³⁾

1)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20톤 미만), 고무보트(30마력 이상), 세일링요트(20톤 미만)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한다)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또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하 함)을 경영하는 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고,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⁵⁾

[「수상레저안전법」 상 보험제도]

구 분	개인보험	사업보험
근거조문	법 제49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법 제49조제2항, 시행령 제31조
보험계약자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수상레저사업자
가입대상	①수상오토바이 ②모터보트(20톤 미만) ③고무보트(30마력 이상) ④세일링요트(20톤 미만)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동력, 무동력)
보험기간	등록기간 동안	사업기간 동안
보험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에 따른 금액 이상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3) 제6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4)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5)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 (생략)
 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보험가입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험 미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경우 2019년 이후 단속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음.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 단속 현황]

(단위 : 명/건)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소유자	147	10	15	18	32	19	53
사업자	6	1	1	-	1	-	3

*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개정안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형벌(소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바, 사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가입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 미가입

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신설은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나 의무위반의 중대성, 보호 법익이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비교할 때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⁷⁾

특히, 행정형벌은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최후적·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입법금지 정신에 따라 형벌이 보호법익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⁸⁾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낙시관리법」, 「마리나항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 등 미가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주된 제재수단으로 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낙시관리법」은 낙시어선업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⁹⁾ 「마리나항만법」은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업 등록사

7)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8) 원래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행정명령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오늘날 미확정인 행정명령위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형벌이 다른 의무확보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되어 있고, 현행 각 행정법규에 있어 행정명령위반의 제재방법으로 거의 모두가 형벌을 채택하고 있어서 형벌법규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라면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각국의 입법례는 행정명령위반에 대하여 탈형벌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도 현행 행정법규상의 형사처벌규정은 대폭 정비·개선되어야 한다고 널리 주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정비·개선의 방향으로 행정형벌로서의 단기자유형과 벌금을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이, 처벌법규는 절차면에서 만이 아니라 실체면에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적합할 것이다. (헌재 92헌가14 결정 1995. 3. 23.)

9)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가

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¹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경우에도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¹¹⁾ 상습적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에 한하여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유사입법례 제재 수준 비교]

근거법률	제재수준	위반 행위
낙시관리법	영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낙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낙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48)
마리나항만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등록사업자(\$41②)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48③)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무보험 운행 금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¹³⁾ 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46③)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자동차 대비 비교적 한정된 환경에서 사용되고, 사고 빈도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상레저사고 및 교통사고 비교 현황]

(단위 : 건)

구분	수상레저사고			교통사고		
	사고	등록대수	비율	사고	등록대수	비율
계	242	70,878	0.34	807,926	100,729,359	0.80
'23년	99	18,593	0.53	198,296	25,949,201	0.76
'22년	67	18,822	0.36	196,836	25,503,078	0.77
'21년	32	18,149	0.18	203,130	24,911,101	0.82
'20년	44	15,314	0.29	209,664	24,365,979	0.86

* 자료: 해양경찰청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해양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유사한 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낙시관리법」, 「마리나항만법」에서는 보험 등 미가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제재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보험가입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표

구 분		수상레저안전법	낙시관리법	마리나항만법	자동차손배법
보 험 가 입 근 거		법 제49조	법 제48조	법 제28조의8	법 제5조
목 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험	낙시터 이용자 및 낙 시어선 승객·선원의 피해 보전 보험	마리나업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전 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시 피해자에게 일정 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 는 보험
보 험 이 가 입	대 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수상레저사업자	낙시터업자, 낙시어선업자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	자동차보유자
	처 벌 수 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 50만원이하 과태료 ◦수상레저사업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위반 정지 1월 - 2차 위반 정지 3월 - 3차 위반 등록 취소	◦낙시터업자(§14①) - 1차 위반 정지 1월 - 2차 위반 정지 3월 - 3차 위반 정지 6월 ◦낙시어선업자(§38①) - 1차 위반 정지 1월 - 2차 위반 정지 3월 - 3차 위반 폐쇄	◦마리나업 등록사업자 - 2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위반 정지 1월 - 2차 위반 정지 3월 - 3차 위반 등록 취소	◦자동차보유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무 운 보 험 행		현행			◦자동차보유자 - 200만원이하 범칙금 - 범칙행위 후 1년 내 동 일위반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벌금
		개정안			
		◦동력수상레저 기구 소유자 - 6월이하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수상레저사업자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